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021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년월일 : 2019년 9월 2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9년 3월 29일 김정환 의원과 7월 30일 김경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2 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,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 대상에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포함시키고,  
  
노인·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체육시설 이용을 공정하게 보장 받고 이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·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

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 제3항 신설)

나.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제9조제3항제1호, 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“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”을 “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”으로 하고

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·노인 등의 취약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
2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
3.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5·18민주유공자, 다둥이”를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다둥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호가목 중 “5·18민주유공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”를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5·18민주유공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”를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

급자” 로 한다.

같은 조 제5호라목, 마목을 각각 마목, 바목으로 하고

같은 조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 |
|--|---|
| 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<br/>           ①·② (생략)<br/> <u>&lt;신설&gt;</u></p>   | 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<u>공정한 이용 등</u>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/> <u>③ 시장은 장애인·노인 등의 취약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</u></li> <li><u>2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</u></li> <li><u>3.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li> </ol> |
| 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<br/>         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2세 이하인 자, 65세 이상인 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</li> </ol> | 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/>           ③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<br/>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-----</li> </ol>  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다른 <u>5.18민주유공자, 다둥이</u>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</p> <p>가. 12세이하인자, 65세 이상인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5·18민주유공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u> : 100분의 50 감액</p> <p>나. 삭제</p> | <p>----- <u>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다둥이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-----</p> |

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라</u>.·<u>마</u>. (생략)</p> | <p><u>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</u><br/> <u>마</u>.·<u>바</u>. (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)</p> |